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93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 어기구·강선우·이개호

황 희・박 정・허종식

소병훈 • 박수현 • 문금주

정준호 · 이상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증가함에 따라 섬지역의 해양과 바닷가에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투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감시활동이나 수거·정화 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
적 지원) ① (생 략)	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	②
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	
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
	<u>원할 수 있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